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별표 1]의 현지교통비(1일당)란 및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구 분	일 비 (1일당)	숙 박 료 (1야당)
의장·부의장	10,000	41,000
위 원	10,000	41,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